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6.3.5., 시행 ’26.7.1.)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사무 위임 근거 조문 정비(안 제17조의2, 안 제18조,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29조의2,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36조의2,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0조, 안 제41조, 안 제41조의2, 안 제41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1.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17조의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6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22조의3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9조의2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31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

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각각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로 한다.

제4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를 각각 “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 · 특
별자치시 · 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
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를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로 한다.

제41조의3제1호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를 각
각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로 한
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위임)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u>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 · 면 · 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재위임) <u>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u> ----- ----- ----- ----- ----- ----- ----- ----- ----- ----- -----.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 ----- ----- ----- ----- ----- <u>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 -----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 ⑤ (생략)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法人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통합특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 ·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

1. -----

(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 라. (생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3. (생략)

② (생략)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특별자

-----특별
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소방청 소관)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

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생략)

2.·3. 삭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5. (생략)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사 -----.

1. (현행과 같음)

4. -----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1. (생략)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또는 <u>특별자치도</u>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③·④ (생략)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u>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u>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u>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1. (현행과 같음) 2.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 -----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 6. (생략)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나. (생략)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8.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삭제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 각각 위임한다.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②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
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
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한다.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
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삭 제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
통상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
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
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특별시장·통합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 -----

-----.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

----- 특별시장·통
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
-----.

2.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 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 · 감독 3. ~ 6. (생 략) ② (생 략)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생 략) ② 삭 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u>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각각 위임한다. 1.·2. (생 략) 3. 삭 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 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생 략)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	----- ----- ----- ----- -----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현 행과 같음) ③ ----- <u>특별 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1.·2. (현행과 같음) 4.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 (생략)

④ 삭제

⑤·⑥ (생략)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② (생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③ 작 제

④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

1.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2.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사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②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삭제

⑤ (생략)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1.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 ⑤ (생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2. (생략)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1.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2. (현행과 같음)

3.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의 승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
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
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
다.

⑧ (생략)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
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
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
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
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⑦ -----

----- 특별시·통
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
----- 특별시·통합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 특별시장·통합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특
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
별자치시장 · 도지사 -----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6